

군포시 자치분권과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공고

군포시 자치분권과장(개방형직위)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일
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개요

임용예정 직	임용직급	인원	임용 기간	직무내용
자치분권과장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(개방형 5호)	1명	2년	○ 주민자치업무,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○ 마을공동체사업 ○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○ 민관협치 ○ 자치분권, 사회단체관리, 각종위원회 ○ 자원봉사센터 관리

※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 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다. 「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예규 제189호)
라. 「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및 「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」

3 응시자격

※ 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- 가. 공통요건
○ 주소지 · 성별 · 연령 제한 없음.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세부자격요건(경력 또는 실적요건)

-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세부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
기준 구분			세 부 자 격 요 건
경 력 요 건	(관련 학과)	석사학위 이하인자	▶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
	학력 기준	박사학위 소지자	▶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
	자격증 기준		▶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※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(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와 별표 6 참고)
	경력 기준	공무원 경력	▶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▶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민간 경력	▶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※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, 자원봉사, 프리 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
실적요건			▶ 공공기관에서 자치분권, 정책수립, 시민소통, 시민단체관리, 갈등조정 등에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
※ 관련분야 : 자치분권, 시민소통, 민관협치, 주민자치, 자원봉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			

4 시험방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(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
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,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.
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(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.
- ※ 직무수행요건(능력요건) :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 관리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

5 임용신분 및 보수수준

가. 임용신분

-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-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임기(계약기간) 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

나. 보수수준

- 경력직 공무원 :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.
- 일반임기제 공무원 : 직급별 연봉하한액(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)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

임용예정직위	임용직급	연봉지급기준액 (연봉하한액)	연봉상한액
자치분권과장	일반임기제(개방형 5호)	50,012천원	87,989천원
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6 원서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4. 7.15.(월) ~ 7.19.(금)

나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(익일특급) 접수

○ 방문접수

- 접수시간 : 10:00 ~ 18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 -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
- 접수장소 : 군포시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
-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1층 민원봉사과 5번 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하고, 응시원서에 부착
-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 접수만 해당)
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
○ 등기우편 접수(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)
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.
 - ※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
- ▶ 주소 : [우15829]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, (금정동)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**우편통상환**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 - ※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불가
- 우편봉투 겉면에 ‘**군포시 자치분권과장(개방형직위) 응시원서**’ 표기
-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
 - ※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고,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.

7 시험일정

공 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7. 2.(화) ~ 7.12.(금)	7.15.(월) ~ 7.19.(금)	7.31.(수)	8.20.(화)	8. 26.(월) 전·후

- ※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- ※ 군포시 홈페이지(www.gunpo.go.kr) > 열린시정 > 군포알리미 > 채용공고

8 제출서류 <순서대로 제출하되 스테이플러, 클립, 양면인쇄 금지>

가. 응시원서 1부(소정양식) - (서식1)

○ 응시수수료 : 10,000원

※ 군포시청 민원봉사과(1층) 5번 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.

※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해당 증명서 첨부

나. 이력서 1부(A4용지, 소정양식) - (서식2)

○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.

※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

다.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2매 이내) - (서식3)

라. 직무수행계획서 1부(A4용지 3매 이내) - (서식4)

마.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- (서식5)

바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- (서식6)

사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- (서식7)

아.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- (서식8)

자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(병역포함) 1부 - (서식9)

차.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

○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

[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]

- ✓ 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, 근무기간, 담당업무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- ✓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.
- ※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, 근무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(서식10)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(인사 담당자 작성, 기관 관인 날인 필수)하거나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.
- ✓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/ 미제출 시 불인정
- ✓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
- ✓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(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.)

카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- 국민건강보험공단(<https://www.nhis.or.kr>)에서 발급
 - ※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
 -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-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

다.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
-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파.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자격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

하. 관련분야 수상,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※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(단,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)하며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.

- ※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- ※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.

9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가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,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또는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,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
- 나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

10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
- 나. 응시서류의 누락, 미비, 기재착오,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.
- 다.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업무와 근무기간,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- 라.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졸업증명서 등)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
- 마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.

바.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사. 「공무원연금법」 개정('18.9.21 시행)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. ※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, 제50조제1항

아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 및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.

자.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(※ 군포시 홈페이지(www.gunpo.go.kr) > 열린시정>군포알리미>채용공고)에서 확인 가능함.

■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(☎031-390-012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참고자료)

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

I. 기본사항

1. 소속기관	2. 직위명	3.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	4. 보직가능 직급
경기도 군포시	자치분권과장	일반직 또는 임기제	지방행정사무관
5. 주요업무내용			비 중
○ 주민자치 업무,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			20%
○ 마을공동체사업			10%
○ 시민행복위원회 운영			20%
○ 민관협치			20%
○ 자치분권, 사회단체관리, 각종위원회			20%
○ 자원봉사센터 관리			10%
6. 관련분야			
○ 자치분권, 시민소통, 민관협치, 주민자치, 자원봉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			
7. 필요지식 및 기술			
○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능력(국회·중앙부처와의 협업 능력)			
○ 시민단체 관리와 소통 능력			
○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립 능력			
○ 갈등조정 경험과 해결 능력			

II. 직무수행요건

1. 임용자격 요건	
가. 필수요건	① 학력제한 ■ 무 □ 유 ② 필수 자격증 ■ 무 □ 유 ③ 기타 필수요건 ■ 무 □ 유
나. 경력 또는 실적요건	1) 경력요건
	(학력 기준) ○ 석사학위 이하인 자 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○ 박사학위 소지자 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
	(자격증 기준) 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※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,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가능
	(경력 기준) ○ 공무원 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민간인 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※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 위원,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
	2) 실적요건
	○ 공공기관에서 자치분권, 정책수립, 시민소통, 시민단체 관리, 갈등조정 등에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

2. 능력요건	① 전문가적 능력 i)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)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능력 iii)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
	② 전략적 리더십 i)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)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)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
	③ 변화관리능력 i)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)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)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
	④ 조직관리 능력 i)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) 업무개선능력 iii) 자원활용능력
	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i)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)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)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
3. 특별요건	① 자격증 ■ 무 □ 유 ② 외국어 : 해당없음 ③ 정보화능력 : 해당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■ 무 □ 유